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 명칭 및 구역 확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0. 12. 9.
행정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0. 11. 13. 마포구청장

나. 회부일자: 2020. 11. 13.

다. 상정일자: 제245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행정건설위원회(2020.12.9.)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가. 제안이유

2021년 3월 준공 예정인 염리제3구역 주택재개발정비 사업의 부지가 3개의 법정동으로 나뉘어 있어 이를 1개의 법정동으로 경계를 조정하여 입주민의 편의 증진과 각종 공부 관리 등 행정업무 처리 효율성 증대를 위해 조례를 일부개정함.

나. 주요내용

○ 법정동 구역 변경(안 별표)

- 아현동 350의 58번지 외 129필지 12,256.8㎡를
염리동으로 편입

3. 검토보고(전문위원 유준상)

- 본 일부개정안은 구청장이 제출하여 행정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2021년 3월 준공 예정인 염리제3구역 주택재개발정비 사업의 부지가 3개의 법정동으로 나뉘어 있어 이를 1개의 법정동으로 경계를 조정하여 입주민의 편의 증진과 각종 공부 관리 등 행정업무 처리 효율성 증대를 위해 조례를 일부개정 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으로는
 - 법정동 구역 변경(안 별표) 아현동 350의 58번지 외 129필지 12,256.8㎡를 염리동으로 편입하는 내용임.
-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안은 동 명칭 및 구역 획정 연혁표를 보면 13번째 변경 실시하는 것이며, 염리제3구역 주택재개발정비 사업의 부지가 3개의 법정동으로 나뉘어 있어 이를 1개의 법정동으로 경계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행에 따른 발생비용 또는 재원조달 등이 일어나지 않고, 관계법령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없음